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6. 9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광역교통 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한우중, 주무관 정미경 • ☎ (044) 201-5045, 5050, 5051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9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『광역교통법 시행령』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확대...개발면적 50만㎡·수용인구 1만 이상
-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 완화·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‘광역교통 2030’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>

-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㎡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,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·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.
-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(개발면적 50만㎡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)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이번 「광역교통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.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,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광역교통정책과 한우중 사무관(☎ 044-201-50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